



고용노동부

고용노동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1.31.)
- 나.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(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3664, 2021.1.31.)
- 다.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(산업보건과-514, 2021.2.1.)

2.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(1.31.)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3.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및 직장근무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내드리오니 관내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 사업장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적용기간: 2021. 2. 1.(월) 0시 ~ 2021. 2. 14.(일) 24시

※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뒤 재판단

○ 대상지역: 수도권 외 지역(14개 시도)

1)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

- 대상시설: 클럽·룸살롱 등 유흥주점, 콜라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홀덤펍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집합금지

붙임1: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

- 대상시설: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파티룸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2: 수도권 외 지역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

2)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시설: 식당·카페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3: 수도권 외 지역 식당·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3)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

○ 대상시설: 결혼식장, 장례식장, 목욕장업, 영화관, 공연장, PC방, 오락실·멀티방 등, 실내체육시설, 실외 겨울스포츠시설, 학원·교습소, 직업훈련기관, 문화센터 등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놀이공원·위터파크, 이·미용업, 백화점·대형마트, 백화점·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(300㎡ 이상)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* '학원'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「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(2021.1.27.)」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4: 수도권 외 지역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4)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

○ 대상시설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

- 리조트, 호텔, 게스트하우스, 농어촌민박 등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5: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5) 모임·행사

○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
○ 조치내용: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·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

-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- 시험 등의 경우, 분할된 공간(예: 교실)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

- 전시회·박람회·국제회의의 경우, 시설면적 4㎡당 1명으로 인원제한, 100인 기준 미적용

붙임6: 수도권 외 지역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6) 종교시설

- 대상시설: 종교시설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 - * '종교시설'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,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「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 (2021.1.27.)」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

붙임7: 수도권 외 지역종교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7) 고위험사업장

- 대상시설: 콜센터, 유통물류센터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8: 수도권 외 지역고위험사업장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

8) 교통시설

- 대상시설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- 법적근거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 호
- 조치내용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9: 수도권 외 지역대중교통시설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각 1부

9) 국공립시설 등

-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
 - 경륜·경정·경마장·카지노 운영 중단,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%로 제한 원칙
 - * 부처·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, 방역 관리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

10) 사회복지이용시설

- 이용인원 50%(최대 100명)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
 -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
 - 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

11) 스포츠 관람

- 10% 이내로 관중 입장

12) 직장근무

- 공공기관은 기관별·부서별 적정비율(예: 전 인원의 1/3) 재택근무 등 실시

- * 치안, 국방, 외교, 소방, 우편, 방역, 방송, 산업안전,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(인력)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(인력)은 제외
-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
- 회식·대면회의·출장자제

○ 민간기관에는 위와 같은 근무형태 개선 권고

끝.

고용노동부장관

수신자 지방관서(지역협력부서), 제주특별자치도지사(일자리과장),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(외국인력국장), 한국고용정보원장,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기관 대표,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기관 대표,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대표

주무관	이동하	행정사무관	최난주	외국인력담당관	전결 2021.2.2.
협조자				관	정해영
시행	외국인력담당관-463	(2021. 2. 2.)	접수		
우	30117	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(어진동 581 고용노동부) 7층 /			www.moel.go.kr
전화번호	044-202-7150	팩스번호	044-202-8027	/ merseum@korea.kr	/ 대국민 공개

"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"